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06
----------	-------

발의연월일 : 2026. 8. 7.

발 의 자 : 한정애·허영·이학영
윤후덕·서영석·이용선
김의겸·조인철·이인영
김 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에너지·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6항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출자·출연 기관은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2.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출자·출연 기관은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다.</u> <u>1.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u> <u>2.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 ----- ----- ----- ----- -----.